

**공 고**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-1645호

**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 
공원조성계획(최초) 열람공고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21호(2017.11.23.)에서가락극동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으로 결정(최초)되고, 송파구 고시 제2024-98호(2024.11.28.)로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(최초) 수립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9월 18일

송 파 구 청 장

1. **공원위치**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
2. **공원면적** : 2,708.3㎡
3. **조성계획(안)** : 기반시설, 조경시설, 휴양시설, 운동시설, 관리시설, 녹지
4. **관련도서** : 열람 장소에 비치
5. **열람기간** :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
6. **열람장소** : 송파구청 공원녹지과(☎2147-3387)
7.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 
조성계획결정(최초)조서

가. 총괄표 (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    | 부지면적<br>( m <sup>2</sup> )         | 시설면적<br>( m <sup>2</sup> ) | 건 축 물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작물<br>(기) | 비 고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수<br>(동) | 바닥면적<br>( m <sup>2</sup> ) | 연면적<br>( m <sup>2</sup> 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|     | 2,708.30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7.70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3         | 시설률<br>19.11% |
| 기반<br>시설             | 소 계 | 411.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1.16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도 로 | 411.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1.16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조 경시 설               |     | 27.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.55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휴 양 시 설              |     | 36.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.79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운 동 시 설              |     | 42.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.20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관 리 시 설              |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3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녹지 . 기타              |     | 2,190.60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녹지율<br>80.89% |
| 시 설 률<br>(법정 60% 이하) |     | ( 517.70/ 2,708.30 ) × 100 =19.11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건 폐 율<br>(법정 5% 이하)  |     | 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## 나. 시설조서

| 구분               | 시설명    | 부호  | 위치              | 부지면적<br>(㎡) | 시설면적<br>(㎡) | 구조 | 규모 | 건축물(㎡)   |     | 공작물<br>(기) | 비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| 바닥<br>면적 | 연면적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2,708.30    | 517.70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43         | 시설율<br>19.11% |
| 기<br>반<br>시<br>설 | 소계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411.16      | 411.16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15.18%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도로     |     | 가락동<br>192번지 일원 | 411.16      | 411.16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조<br>경<br>시<br>설 | 소계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27.55       | 27.55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1.02%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장식가벽   | ①   | "               | 5.02        | 5.02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조형앉음벽  | ②   | "               | 11.60       | 11.60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앉음벽    | ③   | "               | 7.41        | 7.41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디딤석    | ④   | "               | 3.52        | 3.52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휴<br>양<br>시<br>설 | 소계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36.79       | 36.79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15         | 1.36%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휴게공간1  | 가-1 | "               | 17.43       | 17.43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휴게공간2  | 가-2 | "               | 19.36       | 19.36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조형파고라  | ⑤   |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2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등벤치    | ⑥   |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8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단식벤치   | ⑦   | "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5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운<br>동<br>시<br>설 | 소계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42.20       | 42.20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5          | 1.55%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체력단련장1 | 나-1 | "               | 23.09       | 23.09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체력단련장2 | 나-2 |                 | 19.11       | 19.11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체력단련시설 | ⑧   | "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5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관<br>리<br>시<br>설 | 소계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23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안내판    | ⑨   | "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5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공원등    | ⑩   | "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13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CCTV   | ⑪   | "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웬스     | ⑫   | "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1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녹지 및 기타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2,190.60    |  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녹지율<br>80.89% |

## 다. 도로조서

| 구분 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 | 연장(m)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기능  | 기점     | 종점     | 비고 |
|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합 계 |    |    |    |     | 216.56 | 411.16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|    |
| 신설  | 소계 |    |    |     | 216.56 | 411.16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1  | 2.0 | 32.55  | 65.11               | 진입로 | 서측진입부  | 소로 3-3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2  | 2.0 | 24.05  | 48.10               | 진입로 | 동측진입부  | 소로 3-3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3  | 2.4 | 64.45  | 154.67              | 진입로 | 북측진입부  | 주민공동시설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4  | 1.5 | 26.34  | 39.52               | 산책로 | 소로 3-1 | 소로 3-3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5  | 1.5 | 26.49  | 39.74               | 산책로 | 소로 3-3 | 소로 3-1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6  | 1.5 | 18.95  | 28.43               | 산책로 | 소로 3-2 | 소로 3-3 |    |
|     | 소로 |    | 7  | 1.5 | 23.73  | 35.59               | 산책로 | 소로 3-3 | 소로 3-2 |    |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-1685호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5년 9월 일

송 파 구 청 장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(안) 입법예고

### 1. 제정 이유

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」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

의 범위)에 ‘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’이 신설됨에 따라,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송파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 및 위임사항 규정(안 제1조)
- 나. 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 명시(안 제2조)
- 다.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(안 제3조)

## 3. 의견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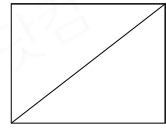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8일(목)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: 첨단도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【의견 제출처】

- 주 소: (우 05552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, 4층 첨단도시과
- 연락처: ☎ 02-2147-2411(FAX 02-2147-3862)
- 전자우편: hk316@songpa.go.kr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[www.songpa.go.kr](http://www.songpa.go.kr)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년 월 일 | 2025. . .<br>(제 회) |

심의의  
결사항

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 
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첨단도시과      |
| 제출년월일 | 2025. 9. . |

기획예산과장 심사필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의 안  
번 호

제출년월일: 2025. . .  
제 출 자: 첨단도시과

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」 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에 ‘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’이 신설됨에 따라,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송파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 및 위임사항 규정(안 제1조)
- 나. 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 명시(안 제2조)
- 다.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(안 제3조)

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규: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분석평가)

라. 기 타

1) 관계법규,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첨

2) 입법예고: 2025. 9. . ~. . (20일간)

3) 심사대상 규제사무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)**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)**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·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규

### □ 사이버안보 업무규정

**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**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4. 3. 5.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. 다만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협회는 제외한다.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·공립 학교
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·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

####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·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 시행에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재원 조달 사항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

### 4. 작성자

-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- 작성자: 주무관    | 통신8급 김 혜 린 |
| - 작성자: 통신관리팀장 | 통신6급 김 영 호 |
| - 작성자: 첨단도시과장 | 행정5급 김 정 혜 |